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 I. 건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김태수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19. 11. 13.
- 다. 회부일 : 2019. 11. 14.
- 라. 의안번호 : 121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함.
-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신고 완료,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이전,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지원 및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등 최종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올해 6월에는 3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11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음.
- 수도권매립지는 건설 당시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관리해온 광역폐기물처리 시설로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환경부가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의 역할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는 비단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 2.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3. 이송처

- 국회, 환경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건의안의 취지

- 본 건의안은 2024년 사용종료가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주요 문제에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공동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2 수도권매립지 조성 및 운영 현황

-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 매립장 매립종료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일대에 약 1,600만㎡규모로 조성되었으며, 199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참고자료).
- 개장 당시 2016년 말 사용종료를 예상했으나,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5년까지 사용기간을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sup>1)</sup>.
- 2015년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가 함께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잔여 매립부지 가운데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이후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대체매립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함.

1) 2018년 폐기물 반입량은 연간 374만 1천톤 규모이며(서울 42%, 경기 39%, 인천 19%), 반입폐기물은 생활폐기물(21%), 사업장폐기물(53%), 건설폐기물(26%)임.

- 하지만, 사용종료시한이 6년 남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검단동, 오류동 등 매립지 인근 13개 주민단체는 현 매립지 사용시한 만료이후 추가 사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함.
- 매립지부지확보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됨.

### 3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참여와 역할

- 환경부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부지 조성에서부터 운영과 관리의 주요 참여자이며, 특히 매립면허의 17.5%를 소유하고 있는 매립면허권자임<sup>2)</sup>.
- 또한, 매립지 연장사용과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과 운영 등을 합의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의 주요 참여자이기도 함.
- 특히,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3개 시·도간 이견조정과 관련부처(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상, 입지지역 주민갈등 해소 등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환경부의 참여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참여’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환경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이 당시 환경청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 등 대부분의 사안을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

2)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는 환경부(17.5%), 서울시(40.9%), 인천시(41.6%)의 합유 상태이며, 인천시 동의 없이 매립연장 신청이 불가능함.

- 또한, 수도권매립지가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이견조정과 부처협상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의 취지도 타당함.

## 참고1 수도권 매립지 현황

### □ 기본현황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58)



○ 부지현황 : 1,600만㎡(≒484만평) (단위 : 만㎡, 만톤)

구분	계	1매립장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	기타
부지면적	<b>1,600*</b>	409	378	307	389	117
매립기간		92.2~00.10	00.10~18.9	<b>18.9~25.8</b> (사용중)	-	-

\* 여의도 면적의 5.5배

○ 매립면허권자 : 환경부(280만㎡, 17.5%), 서울시(655만㎡, 40.9%), 인천시(665만㎡, 41.6%)

\*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합유 상태로 인천시 동의 없이 매립연장 신청 불가

○ 매립면허기한 : '89. 6 ~ (4자합의 매립지사용 종료시 까지)

○ 반입지역 : 수도권 3개 시·도(64개 시·군·구)

- 연간 반입량('18) : 3,741천톤/년(서울 42%, 경기 39%, 인천 19%)
- 반입폐기물 성장 : 생활 21%, 사업장 53%, 건설 26%

□ 3-1매립장 현황

○ 3-1매립장 조성

매립장 면적	총매립용량	매립량	조성당시 매립기간
103만㎡	2,000만㎡	1,450만톤	2018. 9월~2025. 8월(7년)

\* 다짐밀도 및 침하량 고려한 폐기물 매립량 : 1,819만톤

○ 폐기물 반입량 추이 : 감축에 합의하였음에도 오히려 증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664,832톤	3,603,752톤	3,683,882톤	3,740,957톤

- '18년 반입량, 3년 평균(365.6만톤)대비 2.5%(8.5만톤) 증가

\* '18년(374만톤) : 생폐 78(21%), 사폐 200(53%), 건폐 96(26%)

○ 3-1공구 매립종료(예상)

- 현 추세 시  $1,819\text{만톤} \div 302\text{만톤/년}(3\text{년평균}) = 6\text{년}$ (24. 8월 종료)

-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등 매립량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필요

\* 재활용+소각율 제고,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제, 반입수수료 차등화, 직매립금지 법제화 등



##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